

제337회 임시회  
2015. 2. 5.(목)

# 심 사 보 고 서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15. 2. 5.(목)  
행정문화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 2015년 1월 19일

다. 회부일자 : 2015년 1월 20일

라. 상정일자 : 2015년 1월 27일

- 제33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 상정·의결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조운희)

### 1. 제안사유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14. 8. 12)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 신설(안 제19조)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 하도록 명시
-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게 판매되는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부과대상 지역 규정 (안 제20조)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 지역으로 함.

### 3. 검토보고 요지

(행정문화전문위원 : 한철우)

- 금번 개정조례안은 2014년 8월 12일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납부대상 중 제외되던 전기판매업자에게 판매되는 전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을 신설하고, 부과대상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3
----------	-----

제출연월일 : 2015년 1월 1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 1. 제안사유

- 「지방세법시행령」 개정(2014. 8. 12)에 따라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방법 등을 현행 조례에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고납부 방법 신설(안 제19조)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세의무자(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매월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명시
  - ※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중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에게 판매되는 전력은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 부과대상 지역 규정 (안 제20조)
  -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함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해당없음

##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절(제19조부터 제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5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제1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전량에 대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대상지역)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설〉</u>	<p>제 5 절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p> <p>제19조(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발전량에 대 하여 법 제146조제1항제6호에 따 라 산출한 세액을 다음달 말일까 지 해당 발전소 소재지를 관할하 는 시장·군수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p> <p>제20조(부과대상지역) 화력발전에 대 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대상지 역은 충청북도 전지역으로 한다.</p>

## 관련법령 발췌

### □ 지방세법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전용수: 흐르는 물을 이용하여 직접 수력발전(양수발전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
2. 지하수: 지하수를 개발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활용하는 등 지하수를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採水)하는 자
3. 지하자원: 지하자원을 채광(採鑛)하는 자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컨테이너를 입항·출항시키는 자
5.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6. 화력발전: 석탄·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7. 특정부동산: 특정부동산의 소유자

제144조(납세지)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한다. <개정 2011.3.29.>

#### 1. 특정자원

- 가. 발전용수: 발전소의 소재지
- 나. 지하수: 채수공(採水孔)의 소재지
- 다. 지하자원: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소재지. 다만,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광업권이 등록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안분한다.
- 라.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의 소재지
- 마. 원자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바. 화력발전: 발전소의 소재지



## 2. 특정부동산

가. 건축물: 건축물의 소재지

나. 선박: 「선박법」에 따른 선적항의 소재지. 다만, 선적항이 없는 경우에는 정계장 소재지(정계장이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박 소유자의 주소지)

다. 토지: 토지의 소재지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3.29., 2014.12.31.>

1. 발전용수: 발전에 이용된 물 10세제곱미터당 2원

2. 지하수

가.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수된 물: 세제곱미터당 200원

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세제곱미터당 100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채수된 온천수 외의 물: 세제곱미터당 20원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가액의 1천분의 5

4. 컨테이너: 컨테이너 티이유(TEU)당 1만5천원

5. 원자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1원

6. 화력발전: 발전량 킬로와트시(kWh)당 0.3원

제147조(부과·징수) 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납기와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제1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제1호 본문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제146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납

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 납세의무자가 제2호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가. 삭제 <2013.1.1.>

나. 삭제 <2013.1.1.>

②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재산세의 규정 중 제114조, 제115조, 제116조 및 제122조(제122조의 경우는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만 해당한다)를 준용한다. <개정 2010.12.27.>

③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지역과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⑤(생략)

## □ 지방세법시행령

제136조(과세대상) 법 제14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2.31., 2013.1.1., 2013.3.23., 2014.1.1., 2014.8.12., 2014.11.19.>

1. 발전용수: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 다만,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미만인 소규모 발전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하는 흐르는 물로서 해당 발전소의 시간당 발전가능 총발전량 중 3천킬로와트 이하의 전기를 생산하는데에 드는 흐르는 물은 제외한다.

2. 지하수

가. 먹는 물: 먹는 물로 판매하기 위하여 퍼 올린 지하수

나. 목욕용수: 목욕용수로 이용하기 위하여 퍼 올린 온천수

다. 그 밖의 용수: 가목 및 나목 외의 퍼 올린 지하수. 다만, 다음의 지하수는 제외한다.

1)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촌용수 중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외의 지하수

2) 「지하수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같은 항 제5호의 경우 안쪽지름이 32밀리미터 이하인 토출관을 사용하면서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인 가정용 우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하수

3. 지하자원: 채광된 광물. 다만, 석탄과 「광업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광구 중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하인 광구에서 채광된 광물은 제외한다.

4.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여 입항·출항하는 컨테이너. 다만, 환적 컨테이너, 연안수송 컨테이너 및 화물을 싣지 아니한 컨테이너는 제외한다.

5.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6. 화력발전: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력(「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는 전력으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가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

나.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다.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에서 생산된 전력

라.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자가 생산한 전력

##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9. (생략)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사업의 허가) ①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급구역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개시가 일반인의 수요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감, 환경개선 등 공공의 이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2. 공급용량이 공급구역의 수요에 적합할 것
3.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원과 기술능력이 있을 것
4. 공급구역이 다른 사업자의 공급구역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